

알기 쉬운 세무상식

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②

지난호에 이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을 계속 실는다. 이 내용은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세무정보를 토대로 본 편집부에서 정리·개재하는 것이다.

일반과세자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설정, 1년에 4차례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- 제1기 : 예정신고 : 1.1~3.31 사업실적 →
4.1~4.25 신고 납부
확정신고 : 1.1~6.30 사업실적 →
7.1~7.25 신고 납부
- 제2기 : 예정신고 : 7.1~9.30 사업실적 →
10.1~10.25 신고 납부
확정신고 : 7.1~12.31 사업실적 →
다음해 1.1~1.25 신고 납부

사업자는 매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,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.

신고시 내야 할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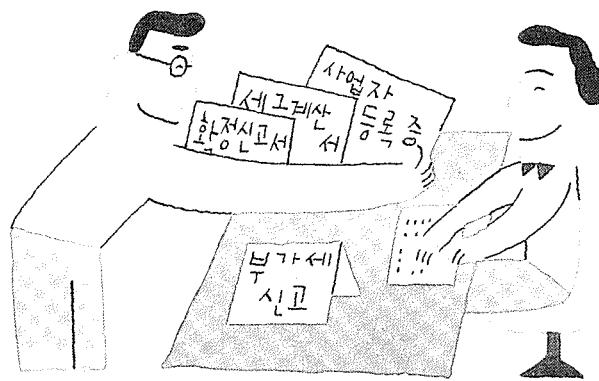
-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
- 주고받은 세금계산서(제출용)
- 영세율 첨부서류(해당사업자에 한함)
- 사업자등록증(확정신고시 검열을 위하여 반드시 지참)

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처음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(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일)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한편 외국법인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50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25일의 신고기간을 더 부여하고 있다.

과세특례자

일반과세자가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신고납부 2번만 하고 나머지 2번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며,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가까운 우



체국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예정신고는 종결된다.

신고방법

- 제1기 : 1.1~6.30 실적 → 7.1~7.25 신고 납부
- 제2기 : 7.1~12.31 실적 → 다음해 1.1~1.25 신고 납부

신고시 첨부서류

- 신고서 2부
- 매입세금계산서
- 사업자등록증 : 검열을 위하여 반드시 지참 세무서에 신고한 세금은 그 신고기간중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하며,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%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.

예정고지서 발부내용

- 제1기 : 4.1~4.10 고지서 발부 → 4.1~4.25까지 납부
전년도 제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/2
- 제2기 : 10.1~10.10 고지서 발부 → 10.1~10.25까지 납부
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/2

계속 사업자로서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해야 한다.

그러나,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과세특례자는 개업일이후 처음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.

소득세는 무엇인가?

소득세는 1.1~12.31까지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.1~5.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.

(연간얻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

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,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내야 한다.

따라서, 다음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.

모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나?

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(이자, 배당, 부동산, 사업, 근로, 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,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.

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분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 [45]